

제 425 호

1974.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서

편집장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12 호 : 외국인에 대한 유통음식제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

◎ 훈 령

제 379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건규정중
개정규정 3

◎ 공 고

제 1 호 :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실시공고 3

제 128 호 : 역촌, 창동, 망우, 검포, 시흥 및
도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공고 5

◎ 예 규

제 266 호 : 병송업무취급지침 5

◎ 사 령

.....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외국인에 대한 유용음식색면제에 관한 조례 제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812 호

외국인에 대한 유용음식색면제에 관한 조례 제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 610 호 (1970. 3. 16)
외국인에 대한 유용음식색 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974. 1. 10

서울특별시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79 호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전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건
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건규정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수사란 제 6 호중 계장 전보 과장 전결로 한다.

1974. 1. 8

서울특별시

부 칙

이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 호

제 1 회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실시 공고

1974년도 서울특별시 사설제 1 회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을 보건사회부령 제 428 호 및 행정안전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6 조제 5 단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4. 1. 10

서울특별시장 인탁식

1. 시 령

가. 원기시험 : 기초간호학개요, 보건

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1, 의료관계 법규	5. 수험료 교부 및 장소
나. 실 기 시 령	74. 2.6 ~ 2.8 (3일간) 서울특별시 보건예방과
2. 응 시 자 격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간호보조원 훈련과정을 이수한자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1) 필기시험 : 74. 2. 10 (일) 10:00 - 11:40 (90분) 2) 실기시험 : 74. 2. 11 (월) 09:00 - 17:30
3. 구 비 서 류	나. 장 소 1) 필기시험 : 한양공업고등학교 (성농구 신당동 251) 2) 실기시험 :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용산구 한남동 8-45소재)
가. 응시원서 (소정양식대 수인증지 1,000원첨부) 1통	7. 합격자발표 74. 2. 15(금요일) 14:00 시청후정계시판
나. 간호보조원 수료증명서 1통	8. 기타 주의사항
다. 건강진단서 (시험병용장 발행) 1통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필요한 필기 도구 (철, 흑색볼펜 또는 만년필) 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09:00 까지 시험장소에 집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라. 실원증명서 1통	나. 기타 주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예방과에 (75-564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진 (상반신명함판 출원전 6원 이내 촬영) 5매	
바. 최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74. 1. 28 ~ 1. 31 (4일간) 서울특별시 보건예방과.	

◎ 건설부공고제 128호

건설부공고제 8.9호 및 11호(67.1.21) 및 제 8호(68.1.23)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하인역역촌, 창동, 망우, 김포, 시흥 및 도봉지구 토지

구획경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 하연기 이를 공고한다.

1973.12.27

건설부장관

가. 변경사항(사업시행기간) :

지구명	당 초 시 행 기 간	변 경 시 행 기 간	비 고
역촌	1967.1.21 - 73.12.31	1967.1.21 - 74.12.31	1년
창동	1967.1.21 - 73.12.31	1967.1.21 - 74.12.31	"
망우	1967.1.21 - 73.12.31	1967.1.21 - 75.12.31	2년
김포	1968.1.23 - 73.12.31	1967.1.23 - 75.12.31	"
시흥	1968.1.23 - 73.12.31	1967.1.23 - 75.12.31	"
도봉	1968.1.23 - 73.12.31	1968.1.23 - 74.12.31	1년

나. 기 타 : 관계서류를 서울시청에 비치하고 관제인의 공인이 공한다. (관계도시생략)

예 규

◎ 예규 제 266호

경 송 업 무 취 급 지 침

1. 목 적

이 지침은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등 사업소장을 당사자보하는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그수행절차와 업무취급관계

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송업무 취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 송 업 무

가. 구청장이 소송당사자인 경우 구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총무과(기획계)소관

(개 경송사건 서류접수 분류이

<p>① 기획계에서 주관과에 이송할때에는 • 송무권 • 을 사용 기일을 지정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관과를 지정한다.</p> <p>(안 2개 이상의 실·과에 관련된 사건</p> <p>③ 주관과가 불분명한 사건</p> <p>(송무권 양식별첨 1 참조</p> <p>(나) 정송사건 심사합의</p> <p>① 소송수관과에서 정송계 관한 방침을 언고지할 때에는 사건에 송무과장 (기획계) 의 심사를 받거나 한다</p> <p>② 기획계에서 심사합의를 할때에 는 합의 문서 우측에 • 송무심사 • 인을 날인하고 • 정송사건심사부 • 를 비치하여 합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 송무심사 • 인 별첨 2 참조</p> <p>④ • 정송사건심사부 • 별첨 3 참조</p> <p>(다) 소송수행과 지정 및 발급</p> <p>① 주관과에서 • 소송수행자 지정 의뢰 • 가 있을 때에는 심사여부를 확인 한후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날인하여 발급한다.</p>	<p>② • 소송수행자 지정서 • 양식 별첨 4 참조</p> <p>(2) 사건주관과</p> <p>(가) 용소 또는 상고방침 구청장이 피소되었거나 상고코 자할때에는 다음에 의거 방침을 얻어 야 한다.</p> <p>① 제 1 안 내부결재 사건 (사건번호, 사건명, 원, 피고명) 을 표시하고 사건개요를 적시 한후 용소 또는 상고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제 2 안 소송수행자 지정서 발급의뢰 사건주관과장은 송무과장 (참조 기획 계장) 에게 용소발침문 사본 및 소상 수행자 지정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수 령할 직원의 직성명 (관계계장 및 직 원을 원칙으로 함) 을 기재하여 의 뢰토록 한다.</p> <p>③ 제 3 안 소송수행자 지정승인 요청 시각 (참조 법무담당관) 에게 용소 또는 상고방침문 사본을 첨부하여</p>
---	---

<p>피소 또는 상고보고와 아울러 소송 수행자 지정승인 요청을 한다.</p> <p>④ 제 4 안 행정소송 피소 또는 상고보고</p> <p>제 4 항 타기관에의 보고 *가*항에 의거 소송제류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한다.</p> <p>(나) 소송 수행자</p> <p>① 소송수행자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의 되어야 한다.</p> <p>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사관 직원 1인과 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소송사건의 판결이 당시의 행정 및 지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당시 고문 변호사도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할수있으나 사전에 시장(법무담당관)의 소송대리인 권임을 받아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위임장 양식별첨 5참조)</p> <p>(나) 소송수행자의 임무</p> <p>①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p> <p>② 소송자료수집 조사지출</p> <p>③ 답변서, 준비서면등의 작성 제출 및 입증</p> <p>④ 변론기일에 출석할변론</p> <p>⑤ 감정서입회 및 보고</p> <p>⑥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관리</p> <p>⑦ 각종 소송수행 비용등의 작성시행 및 보고</p> <p>⑧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의 정리 및 처리</p> <p>(라) 소송진행보고</p> <p>소송진행 보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① 피소보고</p> <p>소장이 접수된 때에는 거일소환장</p>
---	--

<p>및 속경 사본과 유소방침사본을 첨부 소송수행자 직 성명을 표시하여 소양 수행자 지정승인도청과 동기에 미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진행보고</p> <p>①담변서 준비서면등을 제출 하고자 할때에는 제출 3일전에 그 사 본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심대방이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 또는 준비서면등을 접수한 때에 는 사본첨부하여 보고한다.</p> <p>③각종기일(변론, 변증등)에 출정하여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원건보고</p> <p>판결문이 접수된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시장에게 보고시에는 상소여부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의견을 첨기하여야 한다.</p> <p>⑤상고보고</p> <p>1심판결에 불복상고하고자 할때에는 상고방침을 통하여 소양을 수행하되</p> <p>①관결문 접수일로부터 2주 일내에 상고하여야 하며</p>	<p>②상고장을 제출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코자 할때에는 제출 3일전에 시장(참조법무담당 관)에 사본첨부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원고측에서 상고할때 에는 상고기록접수봉지 및 상고장 과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즉시 그 사본을 첨부 시장(참조 법무담 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원고측에서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해에 는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변서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이 경우에도 제출 3일전에 사 본첨부 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나. 보전소장 기타 사업소장이 당사자인 경우</p> <p>보전소장 또는 기타 사업소장 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사건 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p> <p>(1) 민원봉사실(과제가아닌 사업소는 주무제)과(1)함과 동일</p> <p>(2) 사건주관과</p>
--	---

<p>가 (2) 합과 동일 다. 기타 사항 (1) 본처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의거 처리할 것이며 (2) 소송수행과정에서 외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하여 협조를 받아 조치할 것 3. 소원 업무 가. 구청장이 처분한데 대한 소원장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첨부하여 총무과장(기획계)의 심사를 거쳐 시장(참조업무주공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나. 위변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6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그에 관련된 입증자료본 첨부하여야 한다. 다. 타기관에서 처분한데 대한 소원장을 접수할 때에는 즉시 당해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 소원장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간려치 말고 기간을 정하여 (약 1주간) 보정지시하되 보정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위기일내에 보정치 아니할 때에는 소원율위하한것으로 간주처리하겠음*을 첨기토록할 것 마. 기타사업소장의 처분한데 대한 소원장을 접수할 때에는 주무과 (또는 주무계)의 심사를 거쳐 위사항에의거 처리할 것 4. 타기관에의 보고 가. 검찰청에의 보고 행정소송은 소속재류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교법인경우에는 서울고등검</p>	<p>찰청 검사장 대법원인경우에는 대검찰청 (총괄)에 피소 진부판결 및 상고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영한정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송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호 감심의 142-3474 호 1966. 9. 20) 다. 총무처소청심사 위원회에의 보고 시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친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송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사항을 총무처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기자의 소속, 직, 성명 (2) 제소일 사건번호 (3) 판결된 때에는 판결일 및 그 구분 5. 시 부 인 이에규는 1974.1.1 부터 시행한다.</p>
--	--

16-10

제425호

시 보

1974.1.10

별첨 1

송 무 용 건

수 신 과 장 197

사 건 명

사건번호 원 고
의 고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야 차질없도록 조치하
시기 바랍니다.

적 기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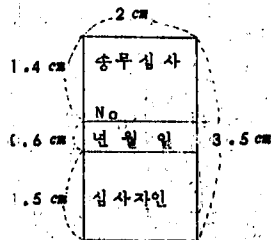
1. 이 발침 결정	년	월	일까지
2. 이 송대 리인 및 이 송수행사의뢰	년	월	일까지
3. 참 거 세 시	년	월	일까지
4. 참 인 신 청	년	월	일까지
5. 기 일	년	월	일까지

과 장

2 부작성하되 첫째같은 미봉지로

별첨 2

송 무 심 사 인



별첨 3

경 송 사 건 실 사 부

일련 번호	월 일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요 지	주관과	비고
	월수	일					

별첨 4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5 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
2.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3.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 1 특별부
서 기 19 년 월 일
피 고 서울특별시

○ ○ 구청장 ○ ○ ○ 직 인
(보전스장)

서울고등법원 제 1 특별부 귀중

2 부보하되 첫째장은 미·5지로

197 년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 원 고
 {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전에 관하여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누 제 호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권 위임하고 하기 권한을 수여함.

- 1. 일체의 소송행위
- 2. 반소의 제기 및 공소
- 3. 재판상의 화해
- 4. 복내리인의 선임
- 5. 목적물의 수령
- 6. 공탁물의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7. 담보권행사처고신청 담보위소신청 동신청에대한 동의 담보위소결정
정본의 수령 등위소 결정에 대한 항고청고기

위 소송을 위임함.

서기 197 년 월 일

주소 서울특별시

위임인 서울특별시

구 청 장

(보건소장)

직 인

사 령

◎ 1974.1.1.

인 사 과 행정주사
행정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대 통 령

공무원교육원
교 수 부 행정주사
행정사무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사장과
경리계장에 보함.

대 통 령

인 사 과 지방행정
사무관
용산구산업과장에 보함.
지방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과과지도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조성두

김태수

조성두

진영호

◎ 1974.1.4.

경기도연원군 지방행정
주 사 보 민병천
서울특별시 견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 1974.1.5.

성 북 구 지방행정
수 도 사 업 소 서 기 보 이범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북구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방행정
보 진 소 주 사 조규식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의하여 견제에 처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
보 진 소 서 기 장영덕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북구근무를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
수 도 사 업 소 서 기 보 김종원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p>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동대문구근무명령함.</p>	<p>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p>
<p>의 약 과 지방행정 주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p> <p>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p>	<p>정 인 국 © 1974.1.6.</p> <p>지 하 철 건설본부</p> <p>지방도목기과로 추서함.</p>
<p>남 대 문 지방행정 근로지회관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p> <p>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p>	<p>김 명 호 © 1974.1.8.</p> <p>용 산 구 종 무 과 지방행정주사</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따른 73.8.18</p>
<p>영 동 포 구 지방행정 보 건 소 서 기</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p> <p>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p>	<p>김 용 하</p> <p>자 (발령제 776 호) 직위해제</p> <p>를 동일가로 취소하고 73. 8.30 자 (발령제 800 호) 징계 처분 (1년)을 동일자로 변경 전체에 처함.</p>
<p>영 동 포 구 지방행정 수 도 사 업 소</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p> <p>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 월에 처함.</p>	<p>황 중 선</p> <p>중 구 지방행정주사보</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따른 73.11.29</p>
<p>영 동 포 구 근 무 명 령 함.</p> <p>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수 도 사 업 소 서 기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p>	<p>박 지 천</p> <p>자 (발령제 1104 호) 징계 처분 (감봉 1월)을 동일자로 변경 전체에 처함.</p>

<p>구회정리2과(유죄종) 지방보육 부직을 명함.</p>	<p>윤수길</p>	<p>중구군무를 명함. 김정숙</p>
<p>마포구수도사업소근무명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5호봉을 급함. 서귀포구수도사업소 지방보육기 원보</p>	<p>정구부</p>	<p>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황순남</p>
<p>구회정리1과파견(74.2.28 까지) 근무명 명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북악공원관리사무소 지방보 육기원보</p>	<p>김무현</p>	<p>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박명옥</p>
<p>구회정리1과파견(74.2.28 까지) 근무명 명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81구보전소 지방보육기원 남부병원파견(74.3.31까지) 근무명 명함.</p>	<p>한중수</p>	<p>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김관설</p>
<p>서귀포구 지방건축기원 주택건설과파견 근무명명함</p>	<p>전유영</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 1974.1.9.</p>		<p>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 1974.1.15</p>
<p>구회정리2과 지방보육기사 원에외하여 그직을 면함</p>	<p>곽일영</p>	<p>경기도 지방보육기 원보시보 조보연</p>
<p>개량2과 지방건축기사보 원에외하여 그직을 면함.</p>	<p>전한섭</p>	<p>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p>
<p>◎ 1974.1.10</p>		<p>지방보육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서울특별시 농촌지도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p>	<p>이연관</p>	<p>성북구군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